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6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
○ 2016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성주군 조례 중 상위법령 제·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, 각 부서별 개별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른 정비(지번 주소→도로명 주소)【안제1조~4조】
: 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 외 3개 조례

○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른 정비(주민등록번호→생년월일)【안제4조~8조】
: 성주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외 4개 조례(11개 서식)

○ 기타 상위법 명칭·용어·인용조문 등 변경에 따른 정비【안제8조~21조】
: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외 13개 조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및「도로명 주소법」등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라.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6. 9. 8. ~ 2016. 9. 28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

제1조(「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 중 “경산리 229번지”를 “청사도서관길 13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중 “성주읍 대흥리 873-1번지”를 “대가면 참별로 2479”로 한다.

제3조(「성주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성주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“삼산리 509번지”를 “삼산1길 266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성주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“경산리 53번지”를 “성주읍4길 25”로 하고,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각각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5조(「성주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3호 서식까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각각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6조(「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지 제2호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7조(「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8조(「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대기환경보전법,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·진동규제법”을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,「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각각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9조(「성주군이장정수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”로 한다.

제10조(「성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7호나목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성주군반설치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성주군 군세감면 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50조제1항”을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50조제1항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9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50조제1항”을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50조제1항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(「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성주군 물품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, 제9조제2항, 제17조제7항, 제28조제2항 중 “경리관”을 각각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5조(「성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.면위임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.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”을 “「주민등록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 및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36조제5항”으로, “용지의 관리”를 “관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18조의2”를 “법 제30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16조(「성주군농공지구오·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농공지구오·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”를 “「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」 제48조에서 제51조까지”로 한다.

제4조 전단 중 “환경관리공단”을 “한국환경공단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8조”를 “「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」 제34조”로 한다.

제27조 중 “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4항”을 “「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」 제49조의6”으로 한다.

제17조(「성주군 분뇨·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 분뇨·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(「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농어업”이란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1호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.
2. “농어업인”이란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제3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.

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」제7조제1호가목·나목· 다목에서 정한 단체(산하단체 포함)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 법」제3조제5호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

제19조(「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71조”를 “제89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제7조”를 “제21조”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법 제65조”를 “법 제82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교육·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”을 “교육·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제42조”를 “제61조”로 한다.

제20조(「성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조 및 제38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2조, 제23조, 제43조,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8조”를 “법 제24조”로, 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”을 “법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에 따른 공원조성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 규칙 제6조”를 “「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영 제6조제1항제8호 내지 제12호”를 “영 제22조제7호에서 제16호까지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8조제2항”을 “법 제24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의2”를 “영 제22조제15호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6조제2항제3호”를 “영 제43조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2조의2”를 “법 제38조”로 한다.

제21조(「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”를 “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○ 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명칭 및 위치)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위치 :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29번지	제2조(명칭 및 위치)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 청사도서관길 13

○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치) 학습원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873-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.	제2조(위치) ---------- 대가면 참별로 2479 ----------.

○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(생 략) ② 소각시설의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509번지에 둔다.	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삼산1길 266---------.

○성주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(생 략) ② 회관은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3번지에 둔다.	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성주읍4길 25-------.

○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사업장폐기물”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,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·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물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법시행령 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. 3.·4. (생 략)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「대기환경보전법」,「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----------. 3.·4. (현행과 같음)

○ 성주군이장정수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읍·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,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----------.

○ 성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.	제2조(기능)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약·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	5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제1항제7호나목-------
6.·7. (생 략)	6.·7. (현행과 같음)

○ 성주군반설치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5항 ----------.

○ 성주군 군세감면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	제5조(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) ① ----------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50조제1항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9조제1항----------.
1.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	1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50조제1항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9조제1항----------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
○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계약심의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군 본청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며,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. 1. ~ 6. (생 략)	제2조(계약심의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재무관-----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

○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 물품의 매입·수리·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·수리·제조품의 요구서에 인하여 요구하여야 한다.	제8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 ---------- ---------재무관----------.
제9조(물품매입요구서의 심사) ① (생략)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.	제9조(물품매입요구서의 심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재무관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 ~ ⑥ (생 략)	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,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	⑦ 재무관----------.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
제28조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) ① (생 략)	제28조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물품의 매입·수리·수선·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(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)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.다만,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.---------- 재무관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○ 성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.면위임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권한의 위임)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·면장에게 위임한다.	제2조(권한의 위임) ----------. ----------
1.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	1. 「주민등록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 및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36조제5항-- 관리 ----------
2.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	2. 법 제30조----------
3.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·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에 관한 사항 (읍·면장도 가능)	<삭 제>

○ 성주군농공지구오·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내의 농공지구공동오·폐수처리장(이하“처리장”이라 한다)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「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」 제48조에서 제51조까지----------.
제4조(관리업무의 대행) 군수는 농공지구공동오·폐수처리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이나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오·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.	제4조(관리업무의 대행) ---------- ---------- 한국환경공단----. ----------.
제12조(배수기준) 폐수배출 사업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BOD, COD, SS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	제12조(배수기준) ---------- 「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」 제34조 ----------.
제27조(체납처분)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의 요청에 의거 군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.	제27조(체납처분) ---------- ---------- 「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」 제49조의6----------.

○ 성주군 분뇨·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수집운반대행) ① 군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·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	제7조(수집운반대행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 제1항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○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 ----------.
1. "농어업"이란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.	1. "농어업"이란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1호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.
2. "농어업인"이란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.	2. "농어업인"이란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제3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.

현 행	개 정 안
3.“농어업관련단체”(이하“단체”라 한다)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.	3. ----------.
가.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」제7조제1호가목·나목·다목에서 정한 단체(산하단체 포함)	가.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」제7조제1호가목·나목·다목에서 정한 단체(산하단체 포함)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기본법」제3조제5호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
나.·다. (생 략)	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
○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.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3조(정의) ----------.
1. “영업자”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	1. ----------.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	제4조(기금의 재원)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	2. 법 제82조----------
3.·4. (생 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 1. (생 략) 2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 3. ~ 6. (생 략) 7.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(이하"영"이라 한다) 제42조에서 ② (생 략)	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 교육·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-- 3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----- 제61조-- ② (현행과 같음)

○ 성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 및 제12조의2, 도시공원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조 및 제38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2조, 제23조, 제43조,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) ① 군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. 다만,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	제4조(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) ① ----- 법 제24조---------- 법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에 따른 공원조성계획----------. 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②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.	② 「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----------.
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항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은 당해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 영 제22조제7호에서 제16호까지----------.
제5조(점용허가의 기준) 군수는 공원 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제5조(점용허가의 기준) ---------- 법 제24조제2항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의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	4. 영 제22조제15호----------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녹지의 점용허가) ①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6. (생 략) ②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3. (생 략)	제8조(녹지의 점용허가) ① 영 제43조제3호-----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38조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
○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----------.